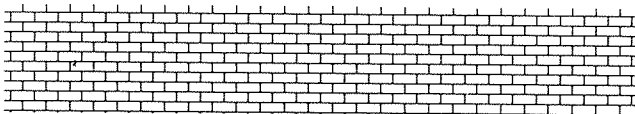


◎ 건설부령 제275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0년 10월15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시설: 관상용 식수대 및 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폭포·등롱·정석·징검다리
2. 휴양시설: 야외탁자·야유회장·야영장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집·사다리타기·수평순환회전차·경사순환회전차·수직순환회전차·모노레일·삭도·도섭지주유지·낚시터
4. 운동시설(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야구장·축구장·농구장·배구장·육상경기장·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한다) 스케이트장·조정장·철봉·평행봉
5. 교양시설: 도서관·온실·교육용 야외극장·과학전시관 천체 또는 기상 관측시설·기념비와 고분·성적·교육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하 “유적등”이라 한다.)
6. 편익시설: 우체통·공중전화통화실·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약국·유우드호텔·수하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수세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계시관·표지·조명시설·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정호·암거·수문·호안옹벽.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시설.

제3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25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50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그 유치거리를 1,000미터 이하로 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7. 묘지공원의 경우에는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 그 공원면적의 규모는 1,00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 도시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견제물)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

치할 수 있는 전체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 면적을 말한다)의 당해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당해 도시공원의 이용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린공원인 때에 한하여 당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100분의 5까지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마”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 “바”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교양시설과 유적 등의 설치와 복원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조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로 하고,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하며, 이중 장의자·그네·미끄럼틀·사장·정글짐 및 변소는 필수적인 공원시설로 한다.
3.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오락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다수인의 적극적인 이용에 공하는 공원시설이어서는 아니된다.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중 신체장애자·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희시설의 종류등)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은 다수인의 이용에 적합한 유희시설로서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하는 수직순환회전차·경사운

환회전차·수평순환회전차로 하고, 운동시설은 철봉·평행봉 또는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 이외의 시설로 하며, 교양시설은 기념비·유적 등이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이외의 시설로 한다.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공원 : 60퍼센트
2. 근린공원 : 40퍼센트
3. 도시자연공원 : 20퍼센트
4. 묘지공원 : 20퍼센트

② 다음 각호에 계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유희시설중 수평순환회전차·경사순환회전차 및 수직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인 경우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편익시설중 매점과 대중음식점 : 10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 편익시설중 유우드호텔 : 1,000,000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 제4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에 한한다)

③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우드호텔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대중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대중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 도시주변의 바깥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 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배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이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주거전용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의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 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을(녹지면적

에 대한 식물 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배연·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정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등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시설등이 녹지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휘할 수 있어 따로 녹지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접속될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공원대장) ① 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 별지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대장은 당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조서
2. 공사설계서
3.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4.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5.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6.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7.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8. 도시공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②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조서
2. 공사설계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12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기간
5. 점용장소 및 면적
6. 점용목적물의 구조
7. 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8.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9. 원상회복의 방법

제13조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서 등) ① 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양도·양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권리·의무의 내용
4. 양도·양수의 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 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상속한 권리·의무의 내용
4. 상속연월일

③ 영 제17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발기인으로 부터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승계인인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4. 승계한 권리·의무의 내용
5. 법인설립연월일

④ 영 제17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승계인과 승계인인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승계한 권리·의무의 내용
4. 법인합병연월일

⑤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신고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고방법) 법 제 6조제 3항 및 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의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은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 지]

도시공원대장작성기준

1.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2. 도시공원의 위치
3.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공원관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도시공원의 관리방법
5. 도시공원의 연혁
 - 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나. 조정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연월일
 - 다. 도시공원사업의 결정 및 지가 또는 시행허가연월일
 - 라. 도시공원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마.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바. 기타 참고사항

6.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명세와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관리청(공원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공원시설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바닥면적 및 연면적)
 -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라. 노천형태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단 공원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등의 혼합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등의 형태중 비중이 가장 큰 형태의 시설로 분류하고, 공작물 또는 노천시설의 설치면적은 당해시설의 외벽 또는 울타리 기타 경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산출한다)
 - 마. 공원시설별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바. 관리방법
 - 사. 공원시설의 설치연월일
 - 아. 공원시설의 사실상 공용개시일
 - 자. 공원시설중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의 시설로서 그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관한 사항

8. 제 5조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합계
9. 제 8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와 당해 도시공원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
10. 점용목적물에 관한 내용
 - 가. 종류 및 명칭
 - 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건축면적
 - 다.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
 - 라. 노천형태의 점용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구조 및 설치면적(하나의 점용목적물이 건축물·공작물 또는 노천형태의 시설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점용면적의 산출은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예에 의한다)
 - 마.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바. 점용기간(점용허가년월일을 포함한다)

11. 도면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기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도시공원의 경계
 - 나. 공원조성계획의 내용
 - 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시설의 내용
 - 라. 점용중에 있는 점용목적물의 내용